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

별표 4 번호 1 경력증명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증명서	1통 별지 제33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의 (갑-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갑-2)

분류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연 금 번 호										
사 진 명 함 판 (5cm×7cm)		성명 (한글)			성 별		주 소				생 활 근 거 지			
		병역관계	해 당 없 음	미 필		복 무								
				신체검사 연월 일	신 체 등 위	병역종류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 대 연 월 일	제 대 연 월 일	주 특 기	
가 족 관 계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 (직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연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	
------	------	-----------	--

용도	※ 이 증명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 ----- ----- -----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 -----.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신 설>

1.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
 2. 퇴직한 교육공무원
 3. 사망한 교육공무원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기관과 대학의 장의 소속으로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감이 발급한다.